제2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8월 2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54
나. 제 안 자: 이종숙 의원 외 12명
다. 제안일자: 2019년 8월 7일
라. 회부일자: 2019년 8월 21일

2.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물 사용승인 전 지도와 사용승인 후 점검을 통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점검의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 신설 (안 제7조)

마.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내용반영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바. 시정명령 등의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장애인복지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8. 21. ~ 8. 26.) 결과: 의견 없음

2) 전문 및 관계법령: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전ㆍ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안 제1～2조〕 상위법 명시 및 용어 정의

2)〔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 점검요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여부 점검 등

3)〔안 제4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안내 후 점검에 협조토록 지도·감독

○ 원활한 점검진행을 위해 점검요원에게 사전통보

4)〔안 제7조〕 점검시기 등

○ 사전점검: 사용승인 전 실시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사후점검: 시설물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 실시

5)〔안 제8조〕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

○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간연장 사유서 제출

○ 점검결과 반영을 위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자료요구

6)〔안 제10조〕 적용의 완화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

○ 적용완화 결과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

7)〔안 제11조~제12조〕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금

○ 점검 후 불이행시 법에 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완공후 사후점검 실시, 점검시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 임

○ 우리구는 전국에서 장애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어르신 인구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설치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있는바,

기존 조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으로 제한하여 사용승인 후 구조·내용변경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사후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주 요 개 정 내 용

내 용	기존 조례	개정안
조례제명	o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o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목 적 (제1조)	o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검	o 사용승인 전·후 지도점검
정 의 (제2조)	o 용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검, 사전점검요원	o 용어: 장애인등, 편의시설 시설주, 점검, 점검요원
구청장의 책무 (제3조)	o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o 점검요원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o 기존 조례 내용 o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신설 o 그 밖의 필요사항 추가
관계공무원의 의무 (제4조)	-	o 관계 공무원의 역할 및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신설
점검시기 등 (제7조)	-	o 점검의 시기 구체화 신설 -사전점검: 사용승인 전에 실시 -사후점검: 완공 후 1년 이상 2년이내 실시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반영 (제8조)	o 별도 두 개의 조항으로 구분	o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항과 결과의 반영에 대항 두 개의 조항을 통합 및 내용 구체화
적용의 완화 (제10조)	-	o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 결정에 내용 신설
시정명령 등 (제11조)	-	o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시정명령·필요조치에 대해 신설
이행강제금 (제12조)	-	o 법 제24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내용 신설

참 고 관계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